

미래를 바꾸는 힘! **고양**

차 례

고 시

고양시 고시 제2026-37호	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	1
고양시 고시 제2026-41호	도로명주소 고시	3

공 고

고양시 공고 제2026-314호	고양 도시관리계획(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	5
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고양시 고시 제2026-37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양시 고시 제2023-70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결정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91-7번지 일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 5-1-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아울러,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6년 2월 3일

고 양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 없음)

- 위치 :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91-7번지 일원
- 면적 : 342,357㎡

2.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(기간 연장)

- 해당 지역은 『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』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(변경)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 자본의 유입 등 사회·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(고양시 고시 제2023-70호)으로 고시한 지역이며,
-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(1회에 한하여 2년)하고자 함.

3. 근거 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-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 5-1-3

4.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(변경)

- (당초) 2023. 2. 14. ~ 2026. 2. 13. (고시일로부터 3년)
- (변경) 2023. 2. 14. ~ 2028. 2. 13. (관련 계획 수립에 따라 2년 연장)
- ※ 단, 기간 만료 전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·지구 등이 결정될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함

5.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(변경 없음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제1항 각 호에 관한 행위가.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- 나. 토지의 형질 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- 다. 토석의 채취
- 라. 토지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
- 마.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6.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행위 (변경 없음)

-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-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
-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-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
-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-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당해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
- 그 밖에 당해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

7.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열람 장소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8. 열람 장소 :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

9. 기타 문의사항 :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(☎031-8075-3074)

고양시 고시 제2026 - 4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3일

고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음들길 39-32 등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	
별 지 참 조				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변경일	변경사유
별 지 참 조				
폐지 도로명주소		폐지일자	폐지사유	
별 지 참 조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(☎8075-3096~9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6. 2. 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,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						
연번	종 전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도로명주소고시일	도로명고시일	부 여 사 유	비 고
1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92-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얼음들길 39-32	2026-02-03	2012-06-01	꺾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	
2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29, 830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32	2026-02-03	2009-09-11	고양시 일산동구라는 의미의 도로명	
3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46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평로 141	2026-02-03	2010-01-26	꺾양공단과 풍동을 잇는 도로	
4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-3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2-1	2026-02-03	2009-09-11	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도로명에 적용	
5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6-2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2-9	2026-02-03	2009-09-11	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도로명에 적용	
6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499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310-1	2026-02-03	2008-10-10	꺾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	
7						

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						
연번	종 전 주 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	비고
1		해 당 없 음				

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						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폐지일	폐지 사유	법정동	비 고	
1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32	2026-01-28	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열실	풍동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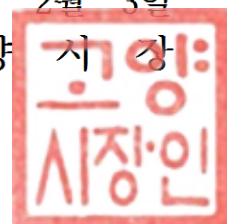
고양시 공고 제2026-314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 공고

1. 고양 도시관리계획(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2월 3일

고양시

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변경

■ 특별계획구역 및 문화, 업무시설 용지(변경)

■ 기정

용도	가구 및 획지	전층 권장용도 (70%이상)	불허용도
숙박 시설	A1	■ 숙박시설	■ 운수시설 :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■ 의료시설 :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■ 공장 : 물품의 제조,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■ 창고시설 : 창고, 하역장 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: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 액화가스판매소, 유독물보관/저장시설, 고압가스충전/저장소 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: 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도계장, 버섯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, 식물과 관련된 유사시설 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: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■ 묘지관련시설 : 화장장, 납골당,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	A2		
	A3		
	A6-2		
	A7		

■ 변경

용도	가구 및 획지	전층 권장용도 (70%이상)	불허용도
숙박 시설	A1	■ 숙박시설	■ 운수시설 :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■ 의료시설 :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■ 공장 : 물품의 제조,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■ 창고시설 : 창고, 하역장 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: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 액화가스판매소, 유독물보관/저장시설, 고압가스충전/저장소 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: 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도계장, 버섯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, 식물과 관련된 유사시설 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: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■ 묘지관련시설 : 화장장, 납골당,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	A2		

용도	가구 및 획지	허용용도	불허용도
숙박 시설	A3	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	허용용도 외의 용도
	A6-2		
	A7		
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7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: 변경

1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2) 특별계획구역 용도·용적률·건폐율·높이·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

■ 기정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7	A3	권장용도	• 숙박시설
		용적률	• 350% 이하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높이	• 100m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-간선가로변 3 ~ 5m이격
		교통처리	• 중로 3-6에서의 차량 진·출입 허용 • 공공보행통로-O3부지와 공동으로 지정
		기타사항	• 블록형 개발 가능 • 숙박시설 객실수- 약 300실
8	A6-2	권장용도	• 숙박시설
		용적률	• 350% 이하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높이	• 100m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-간선가로변 3 ~ 5m이격, • 주거용지변 10m이격
		교통처리	• 대로 2-4에서의 차량 진·출입 불허 • 중로 2-1 및 중로 1-3에서의 차량 진·출입 허용
		기타사항	• 블록형 개발 가능 • 숙박시설 객실수- 약 960실
9	A7	권장용도	• 숙박시설
		용적률	• 350% 이하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높이	• 100m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-간선가로변 3 ~ 5m이격, • 주거용지변 10m이격
		교통처리	• 대로 2-2 및 대로 2-4에서의 차량 진·출입 불허 • 중로 1-3에서의 차량 진·출입 허용
		기타사항	• 숙박시설 객실수-약 1,170실

■ 변경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7	A3	허용용도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
		용적률	• 350% 이하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높이	• 100m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-간선가로변 3 ~ 5m이격
		교통처리	• 중로 3-6에서의 차량 진·출입 허용 • 공공보행통로-O3부지와 공동으로 지정
		기타사항	• 블록형 개발 가능 • 숙박시설 객실수- 약 300실
8	A6-2	허용용도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
		용적률	• 350% 이하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높이	• 100m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-간선가로변 3 ~ 5m이격, • 주거용지변 10m이격
		교통처리	• 대로 2-4에서의 차량 진·출입 불허 • 중로 2-1 및 중로 1-3에서의 차량 진·출입 허용
		기타사항	• 블록형 개발 가능 • 숙박시설 객실수- 약 960실
9	A7	권장용도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
		용적률	• 350% 이하
		건폐율	• 50% 이하
		높이	• 100m 이하
		건축선	• 건축한계선-간선가로변 3 ~ 5m이격, • 주거용지변 10m이격
		교통처리	• 대로 2-2 및 대로 2-4에서의 차량 진·출입 불허 • 중로 1-3에서의 차량 진·출입 허용
		기타사항	• 숙박시설 객실수-약 1,170실

8.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

1) 특별계획구역(A3)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나) 용도지역·지구의 결정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다)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라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마) 건축물의 용도·밀도·배치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
■ 건축물의 용도 결정(변경) 조서

- 지정

용도	위치	계획지침(내용)		세부개발계획
숙박 시설	A3	권장 용도	• 숙박시설(70%이상)	• 연면적 70% 이상 - 관광숙박시설
		불허 용도	■ 운수시설 :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■ 의료시설 :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■ 공장 : 물품의 제조,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■ 창고시설 : 창고, 하역장 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: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위험물저장소, 액화가스취급소, 액화가스판매소, 유독물보관/저장시설, 고압가스충전/저장소 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: 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 도계장, 버섯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, 식물과 관련된 유사시설 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: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■ 묘지관련시설 : 화장장, 납골당,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	• 연면적 30% 미만 -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

- 변경

용도	위치	계획지침(내용)		세부개발계획
숙박 시설	A3	허용 용도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
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외의 용도	• 허용용도 외의 용도

■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건축물의 배치·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2) 특별계획구역(A7)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나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다) 건축물 용도·밀도·배치 등에 관한 계획 : 변경

■ 건축물의 용도 결정(변경) 조서

- 기정

용도	위치	계획지침(내용)		세부개발계획
숙박 시설	A7	권장 용도	• 숙박시설(70%이상)	• 관광숙박시설(연면적 70% 이상) • 연면적 30% 미만 - 생활숙박시설 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다, 라 및 바목 중 공공도서관 -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바, 아, 자 및 하목
		불허 용도	- 생략 - ※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지침(기 결정 고시) 내용과 동일	• 권장용도 외의 용도

- 변경

용도	위치	계획지침(내용)		세부개발계획
숙박 시설	A7	허용 용도	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	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
		불허 용도	허용용도 외의 용도	허용용도 외의 용도

■ 건축물의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건축물의 배치 ·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■ 차량 · 동선 및 주차에 관한 결정 조서

□ 기타사항

○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2026. 2. 3. ~ 2026. 2. 23.

○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: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, 일산동구청,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

○ 관련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○ 기타사항 :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
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청 도시
계획정책관(☎031-8075-306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
될 수 있으며, 공람장소에서 공람 내용의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을 금지합니다.